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김 덕 우 환경처 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 스스로가 지역내의 환경문제를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각 지역에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처리문제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지나친 지역적 이기주의 때문에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해당자치단체에서는 골머리를 앓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주민생활주변의 환경오염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비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와같은 문제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을 분명히 함에 따라서 지역내의 일반적인 오염문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즉,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앞장설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수계 및 대기의 영향권으로 구분하는
영향권 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관리대책을 수립 하고
영향권내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권역별 환경관리 위원 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역별 단위로 편리만 너무 강조될 경우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전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환경은 그 특성상 수계와 대기의 영향에 따라 지방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동되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든가 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근지방자치단체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광역행정협의체 또는 중앙정부의 중재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각종위락시설의 유치, 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등이 자행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지역내 주민간의 마찰등을 우려할 수도 있다.

즉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론자가 여론의 지지를 얻어 지방의회나 지방단체장에 선출 될 가능성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각종 산업시설이 공해의 주범이라는 인식때문에 공장시설이 못들어서게 되고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기피, 대기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연료사용 규제등 주요한 국가환경시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가. 환경영향권별 관리체계 구축

국토나 에너지 자원과 같이 환경자원 즉, 맑은 물, 공기, 토양 및 자연환경등도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원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수계 및 대기의 영향권으로 구분하는 영향권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영향권내의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권역별 환경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권역별 환경관리체계〉

권역단위	지 역 설 정	주관기관	관 련
대권역	한강권, 낙동강권, 영산강권, 서남해안권	환경처 (전국 단위)	•국토종합건설 계획
중권역	6개의 수계를 중심으로 설정	지방환경청(수계중심)	•지방개발계획
소권역	인접 시·군간 광역관리 체계 구축	지방환경청(수계중심)	•공장건설등 산업입지계획

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한 집행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오염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배출업소 지도단속, 상수원과 정수장관리, 하수처리장 설치운영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때까지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을 잘 보전한다든가 환경오염방사업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이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